

**환경부
보도자료**

2005년 3월 7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 '05. 2. 배포
- ☐ 사진 없음
- ☐ 총 13쪽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이찬희 과 장
유동욱 사무관

전화
(메일)

02-2110-6686
robin2072@me.go.kr

국내에도 환경컨설팅 전문업체 생긴다

- ◇ 환경부는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 환경 관련 자문 및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환경컨설팅업을 새로 신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 ◇ 선진국과 같이 국내기업들도 환경컨설팅 전문업체와 손잡고 기후 변화협약, 환경무역규제 등에 대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컨설팅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

☐ 환경부는 환경컨설팅업 신설과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3월 7일 입법예고하였다.

☐ 최근,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환경무역장벽 등으로 환경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어 전문적인 환경컨설팅회사의 도움이 절실하나,

○ 국내는 경영컨설팅분야만 활성화되어 있을 뿐, 환경컨설팅은 그 인식조차 희박하여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컨설팅 회사나 법률회사 등이 부수적으로 환경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컨설팅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단계로 아서더리틀(Arthur D. Little), 이알엠(ERM) 등 전문업체들이 상당수 있음

□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환경컨설팅 전문업체의 등장을 촉진, 환경컨설팅이 국내에서도 명실공히 컨설팅의 한 전문분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 부수적으로 현재 취업난을 겪고 있는 환경전문고급인력의 고용을 확대시키며,
- 등록업체에 대한 공신력 부여로 환경컨설팅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환경컨설팅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 환경규제 및 환경무역장벽에 대해 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골자는

- 환경컨설팅회사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 환경컨설팅의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

《환경컨설팅의 주요사업내용》

- ①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안 제시
- ② 조직의 환경성을 분석하여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제공
- ③ 환경 관련 인·허가 등 환경행정절차의 대행서비스 제공
- ④ 환경산업체 창업 및 운영, 인수·합병 등 컨설팅
- ⑤ 환경오염의 예방 및 최적처리 관련 컨설팅
- ⑥ 환경경영 및 환경기술 관련 컨설팅 등

-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창업보육 센터의 운영 등을 통한 창업지원,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 등 기본적 사항과 함께
- 특히, 환경컨설팅 수요를 촉진시키고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환경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컨설팅 용역비의 일부를 환경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중장기적인 육성책 마련을 통해 환경컨설팅업을 지식기반환경서비스업으로 정착시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며,
- 동 법안은,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되어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붙임 : 1. 환경컨설팅업의 현황
2. 입법예고안 전문

〈붙임 1〉 환경컨설팅업의 현황

1. 환경컨설팅업의 정의

- 환경컨설팅업은 환경 관련 조사·분석·진단·상담·정보제공·교육
대행 서비스 등을 행하는 지식기반 환경서비스업

〈참고〉 해외 환경컨설팅 기업의 유형분류

◇ 전문성에 기초한 전문컨설팅 기업

- 특정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특정문제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만을 제공

〈예〉 Ardea Consulting : 조류 관련 야생생태 컨설팅

EnTact Solutions : 토양 조사·분석을 통한 복원 컨설팅 등

◇ 일반경영컨설팅업체에서 출발한 환경경영 전문 컨설팅

- 일반적인 경영컨설팅에서 환경산업체의 창업에서 관리, 조직설계
등 일반적인 컨설팅 업무와 국제환경경영인증(ISO 14000 등) 획득
지원 등 환경경영 컨설팅으로 사업을 확장한 경우

〈예〉 Arthur D. Little : 환경경영과 일반 경영컨설팅 업무

◇ 정부정책과 관련된 적합성(Compliance)관련 업무 전문

- 특히 미국의 컨설팅 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정부의 오염허용기준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 또는 환경분쟁문제의
중간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예〉 Environmental Compliance Consultants, Inc 등

◇ 환경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서비스 제공 기업

- 기술컨설팅에서 환경경영 컨설팅 서비스까지를 모두 제공

〈예〉 Essential Technologies Inc, Hemphill, Green&Associates Inc 등

2. 현황 및 전망

- 환경컨설팅업의 세계시장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283억달러 수준이며 약 64%인 181억달러의 시장이 북미지역에 형성
 - 미국의 경우 1997년 기준으로 2000여개 환경컨설팅업체가 활동중이며 연간 매출액은 153억달러 수준

※ 미 환경청은 2000년에 버지니아 북부에 위치한 소규모 환경컨설팅업체인 Resources Application Inc(RAI)와 1,70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

- 유럽은 더욱 강화된 환경규제의 영향 및 법제도의 뒷받침으로 환경컨설팅업의 발전여건이 이미 조성된 상태

- 영국의 경우 시장규모는 1997년 이후 평균 15%씩 성장, 2000년에는 10억파운드를 초과

- 일본의 경우 2000년도의 시장규모가 2,200억엔이고 2010년까지 6.4% 성장, 4,100억엔에 이를 전망

- 「전국 상하수도 컨설턴트 협회」, 「일본 폐기물 컨설턴트 협회」 등 자발적 환경컨설팅 협회가 활성화

- 국내시장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860억원 수준이며 2010년까지 5,270억원대로 성장할 전망

※ “무한한 가능성, 환경산업”(2003.삼성지구환경연구소)

- 현재, 국내에는 스스로의 활동을 ‘환경컨설팅’으로 보는 업체가 총 68개 기업으로 조사됨

- 엔지니어링업체,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등이 대부분으로 아직은 선진국과 같은 대형 전문업체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

〈붙임 2〉 입법예고안 전문

환경부 공고 제2005- 호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환경경영의 확산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컨설팅업을 지식기반환경서비스업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업종신설을 위한 자율등록제를 도입하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민간 및 공공조직의 환경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진단·상담·정보제공·교육·대행 서비스 등을 행하는 회사로서 안 제18

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여야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하여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컨설팅회사가 환경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다. 환경컨설팅회사와 환경컨설팅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및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8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전화번호 02-2110-6686/2 FAX 02-504-4439, 전자우편 : robin207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컨설팅회사”란 민간 및 공공조직의 환경성,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및 정부시책과 그 대응방안 등에 대한 조사·분석·진단·상담·정보제공·교육·대행 서비스 등을 행하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제18조의2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8조의2(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호에 대한 조사·분석·진단·상담·정보제공·교육·대행 서비스 등을 행하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보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민간 및 공공조직의 환경성
2.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및 정부시책과 그 대응방안
3.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절차
4.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
5. 환경오염의 예방 및 최적처리

6.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

7.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8. 환경기술 개발 및 실용화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

1. 임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제18조의3(환경컨설팅업에 대한 지원)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컨설팅회사의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2. 환경컨설팅회사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3.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4.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5.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컨설팅회사가 환경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4(비밀 준수의 의무) 환경컨설팅회사와 환경컨설팅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및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컨설팅회사

제33조중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5항, 제18조의2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4조제4호 내지 제6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
제3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u>“환경컨설팅회사”란 민간 및 공공조직의 환경성,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및 정부시책과 그 대응방안 등에 대한 조사·분석·진단·상담·정보제공·교육·대행 서비스 등을 행하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제18조의2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u>
<u><신 설></u>	제18조의2(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u>다음 각호에 대한 조사·분석·진단·상담·정보제공·교육·대행 서비스 등을 행하는 상법상의 회사로서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보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u>

우에도 또한 같다.

1. 민간 및 공공조직의 환경성

2.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및 정부시책과 그 대응방안

3.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절차

4.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

5. 환경오염의 예방 및 최적처리

6.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

7.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8. 환경기술 개발 및 실용화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

1. 임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

<신 설>

<신 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
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
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
우

제18조의3(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컨설팅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컨설팅회사의 협회 설립
및 운영지원

2. 환경컨설팅회사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3.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4.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5.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컨설팅회사
가 환경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4(비밀준수의 의무) 환경

건설팅회사와 환경컨설팅 과정
에 참여한 전문가 및 임직원 또
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사후관리)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 및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 설>

7. (생략)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32조(사후관리)① (현행과 같음)

②

1. ~ 6. (현행과 동일)

7. 환경컨설팅회사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8조제
5항, 제18조의2제3항 및 제22조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u>의 규정에 의한</u>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청문)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청문)-----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건설탕업의 등록취소</u>
4. ~ 6. (생략)	5. ~ 7.(현행 제4호 내지 제6와 같음)
제3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제1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u>